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97년도 이후)

1.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함께 작성할 경우 작성방법은

질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하여도 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동법 제49조의2에 규정된 공정안전보고서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서 정한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위험예방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이행하는 것으로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동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삭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많은 경우 안전보건관

리규정에 근거조항을 두고 별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함(산안 68320-69, '97. 1. 31).

2.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질문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선임기준 대상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VAT)포함 금액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함(산안(건안) 68307-557, '97. 8. 6).

3. 시공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가

질문 외국회사를 포함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도급 분할시공 방식으로 TURN-KEY로 계약되었을 경우 외국회사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적용 또는 일부 적용)하는 바,
 - 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26, '97. 2. 25).
 산업안전보건법 3조(적용범위)

4. 기술지도 계약체결에 있어 공사기간 적용방법은

질문 공사계약만 체결하고 미착공상태에 있던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인이 발주처의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공사계약서 준공기일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6호)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도급인의 계약서상 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서상의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이 실질적으로 착공신고를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서상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95. 2. 23)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 귀 질의의 부도나 설계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공사주체 또는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등이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이나 민법 등 계약관련법령 등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67, '97. 1. 30).

5. 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일 경우 계약일자 적용시점은

질문 장기계속공사로서 기술지도 제도 시행이전('95. 3. 1)에 최초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97 원 계약자(갑)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사(을)가 승계하여 시공할 경우 시공연대보증사(을)가 계약일자 적용시점은 원 계약자의 최초공사계약 일자인지 아니면 시공연대보증사가 승계한 일자인지?

답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95. 3. 1 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위 계약된 공사라 함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일자를 말하고,
 - 만약, 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회사가 원 계약자의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377, '97. 5. 20).

6.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며칠을 의미하는가

질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중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란 공사기간이 며칠 미만을 의미하는지?

답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한 력(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함.

- 예를 들어 '97. 9. 1부터 3월이란 11월 30일까지 일수인 91일을 말함(산안(건안) 68307-623, '97. 9. 18).

7.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질문 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에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하였을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 '95. 7. 10) 제18조 제3항에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비목을 달리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8조 제1항에 “안전관리비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사용기준에 보험료는 없음.
- 따라서 안전관리비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지급할 수 없음(산안(건안) 68307-253, '97. 4. 4).

8.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질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중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 항목 적용에 있어 유류비와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 제8조 제1항 별표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제4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차량은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하며, 당해 현장내에서 순찰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 유류비 및 오일교환 등 소모품 교환비 등에 한하여 가능하고, 렌트비용, 각종 보험금, 수리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은 사용할 수 없음(산안(건안) 68307-118, '97. 2. 21).

9. 본사 업무연락(공문)을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서류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가

질문 본사 안전팀에서 전사적 재해예방활동 일환으로 안전홍보물 및 안전용품을 일괄 제작하여 업무연락으로 공지한 후 현장에 배포 사용할 경우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처리시 본사에서 전산처리에 의한 원가이체로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투자를 하고 본사에서 전 현장에 영수증을 배포 증빙처리를 하고 있음. 이런 번거로움을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영수증대신 본사 안전팀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단위 건설사업장(현장)별로 계상·사용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단위 사업장별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사의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07-557, '97. 8. 6).

답변 “병”설이 타당함.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강제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동 고시 별표1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의해 계상된 금액으로

- 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회사에서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한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 공제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목적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551, '97. 8. 4).

10. 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산출방법은?

질문 A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가 210,350,382원인데 실제 경리장부의 안전관리비 계정상 256,923,59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경비임금, 면장갑 구입비용,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타법령에 의한 안전진단비용 등 52,857,241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적합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는 204,066,349원인 경우?

<갑설> 위 현장은 법적 표준안전관리비가 210,350,382원인데 52,857,241원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은 25.13%로 보아야 한다.

<을설> 실제 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256,923,590원 중 52,857,241원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은 20.6%로 보아야 한다.

<병설> 실제 적합하게 집행된 표준안전관리비는 204,066,349원인데 이 금액은 법적 표준안전관리비 210,350,382원에 비하여 6,284,033원이 부족하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을 부족금액의 법적 안전관리비에 대한 비율인 2.99%로 보아야 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배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건설사업장에서 사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각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정산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18, '97. 11. 10).

12.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질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나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을 경우 기술지도 면제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답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는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면제사업장이 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20, '97. 3. 26).

13. 안전관리비, 인건비 정산시 공사계약 내역서상 인건비인가 아니면 실투입 인건비인가

질문 표준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비 인건비를 정산할 경우 실제로 사용한 실투입인건비, 공사계약 내역서상의 인건비, 건설품셈에 의한 공수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 중 어느것으로 정산하는지?

답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별표1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실제 투입·사용한 인건비를 말함(산안(건안) 68307-830, '97. 12. 29).

14.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란

질문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비의 공제를 계약내역서상 금액과 설계내역서상의 금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5, 시행규칙 제32조의 3 별표6의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2항 다목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안전관리비는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함(산안(건안) 68307-796, '97. 12. 16).

15. 용접작업자가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인가

질문 (1)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철, 산화규소, 산화망간 등이 6월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2) 작업특성상 간헐적으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고 용접작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작업부서 전 근로자를 특정화학물질 취급작업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 또한 망간의 함유량 기준으로 특정화학물질로 분류하기 보다는 작업공정상 망간이 얼마나 비산하느냐에 따라 판단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보건규칙 제1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9조 제4항에는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는 당해물질의 가스·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용접근로자의 경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망간 등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간헐적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당 유해인자의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한 바 없으므로 유해인자의 취급기간, 취급량, 작업방법 등에 관계없이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산보 68340-266, 97. 3. 25].

16. 복합공종을 일괄발주할 경우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방법은

질문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 포함)를 일괄발주하는 경우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비요율 적용시 주된 공사의 단일요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종류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산재보험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상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발주방식과는 관계없이 위 기준에 의하여 보험적용요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95-45호, '94.

10. 21)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 안전관리비 계상도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질의에서와 같이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일괄발주하였다면 당해 지하정거장 공사의 종류(예 : 중건설일 경우 중건설)에 따른 비율을 적용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279, '95. 6. 3).

17. 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는

질문 (1)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4유기용제 1, 2, 3종, 별표6 특정화학물질 제1, 2, 3류만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에 폭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1)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이외의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의무가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은 동법시행규칙 제93조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 정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동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고 사료됨[산보 68341-827, '93. 7. 28].